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6.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90호로 2022년 6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및 관련 용어 전반적인 정비

다. 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5. 6. ~ 5. 26. /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임.

### ○ 주요 내용은

#### 가. 제명 및 적용대상 변경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 이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고, 이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상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5조제5항에서는 상위법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 구입이나 임차 시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라.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동시에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최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3호~제10호(생략)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